서울특별시성북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

[시행 1999. 10. 27.] [규칙 제339호, 1999. 10. 27., 제정]



서울특별시 성북구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(이하 "시조례"라 한다) 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(이하 "자금"이라 한다) 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금 운용·관리) ① 자금의 융자는 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 한다) 로부터의 배정자금 또는 성북구 일반회계 예산에 의한다.
 - ②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3조(자금 융자대상)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의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성북구청장 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 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특별정비계획 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에 의해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・점포주・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- 제4조(융자한도) 자금의 융자한도는 정비계획에 의한 광고물 특별정비소요자금 이하로 하되, 업소당 융자한도는 자금이 시 배정자금인 경우에는 시장이, 구 일반회계 예산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5조(융자기준)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 - 1. 융자기간 및 상환: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 - 2. 이자율
 - 가. 시 자금 : 시장이 정하는 금리
 - 나. 구 자금 :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
 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·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·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 배정자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- 제6조(융자금 신청 등) ①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, 정비대상·물량·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 배정신청을 하거나,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
- 제7조(융자원리금 상환) 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월 말일 (원금은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 부터) 로 하며, 4/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.
 - ③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전납입 익일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.
 - 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 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 - 1.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
 - 2. 특별정비 후 법・령・시조례・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・설치한 경우
 - 3. 업종변경 이전 등으로 융자지원 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,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 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(보칙)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